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디지털자산 정책포럼 토론회

2024. 4. 30.(화) 14:00~17:00 | 전경련회관 3F 다이아몬드홀

## Program Book

주최 | 김·장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호서대학교 디지털금융연구센터

## 목차

개요 · 프로그램	03
발표1. 글로벌 가상자산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이종섭 교수   서울대학교	05
발표2.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현황과 글로벌경제력 강화 방안 정영기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27

# 개요

- 행사명 | 디지털자산 정책포럼 토론회
- 주제 |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14:00~17:00
- 장소 | 전경련회관 3F 다이아몬드홀
- 주최 | 김·장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정책포럼
- 주관 |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호서대학교 디지털금융연구센터

# 프로그램

시간	세션	주제	
~14:00		등록	
14:00 ~ 14:25	<b>개회식</b> 사회 장규현 교수   호서대학교	개회사   임종인 대표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환영사   정계성 대표   김·장법률사무소
		축사	
14:25 ~ 14:30		기념 촬영 및 장내 정리	
14:30 ~ 15:00	<b>발표</b>	주제 : 글로벌 가상자산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자 : 이종섭 교수   서울대학교	
15:00 ~ 15:30		주제 :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현황과 글로벌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자 : 정영기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15:30 ~ 15:45		다과 및 장내정리	
15:45 ~ 17:00	<b>토론</b>	주제 :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 경쟁력 강화 방안 좌장 : 임종인 대표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토론 : 강현정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구태연 변호사   법무법인 린 / 테크그룹 총괄 김용영 부장   매일경제 김재진 부회장   DAXA 이석란 과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17:00		폐회사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디지털자산 정책포럼 토론회

발표 1

# 글로벌 가상자산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이종섭 교수 | 서울대학교

#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www.jongsublee.com](http://www.jongsuble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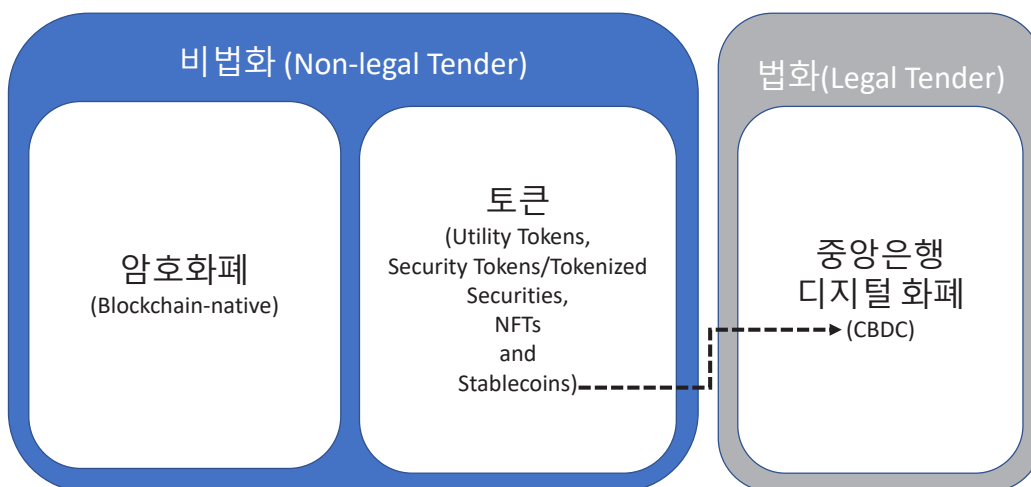
## 발제개요

- 가상자산 시장의 구성 및 기술적 개발 현황
- 가상자산 사업 현황
- 가상자산 사업의 경제적 가치
-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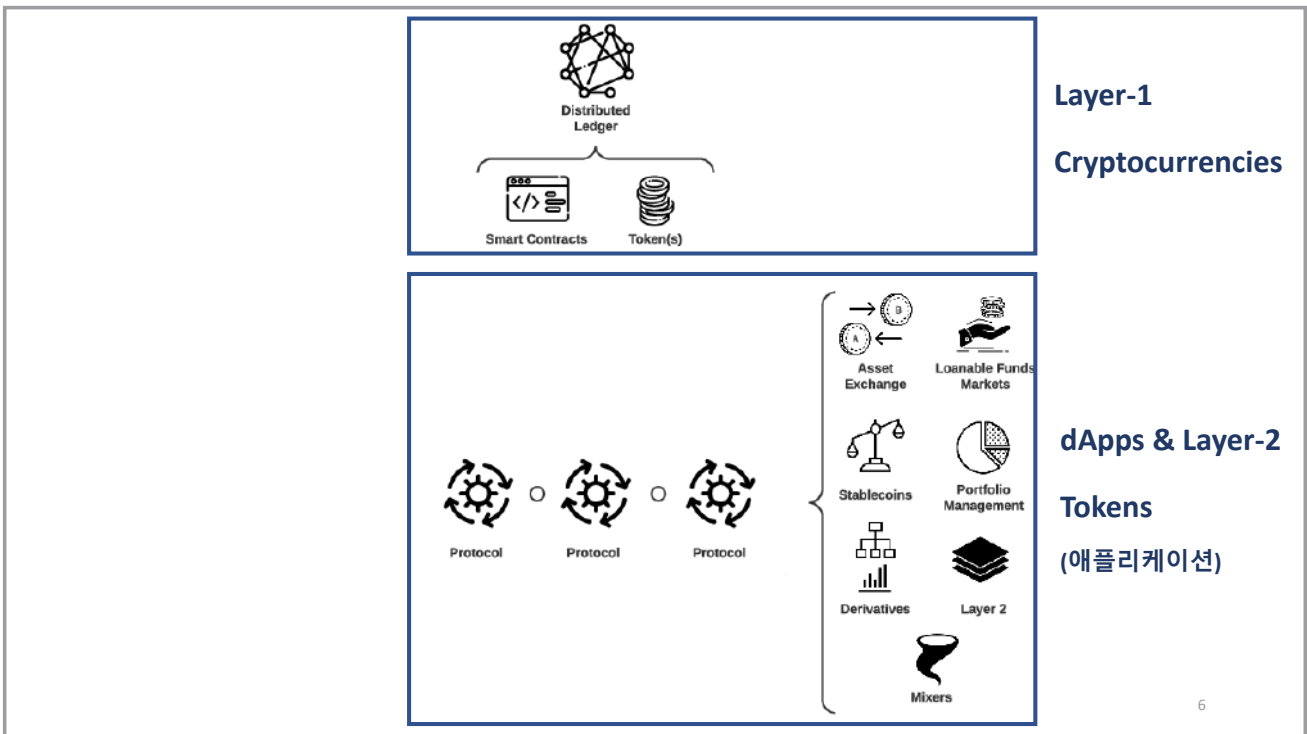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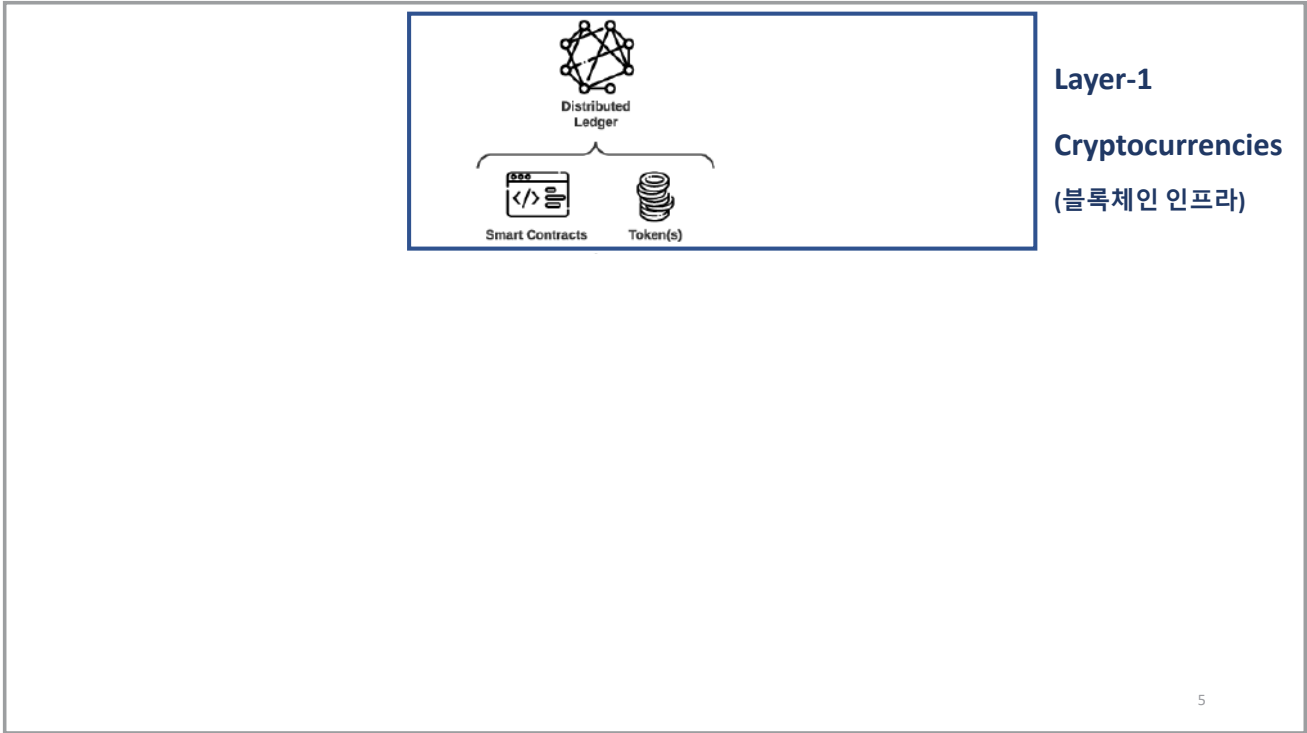
## 가상자산 시장의 구성 및 기술적 개발 현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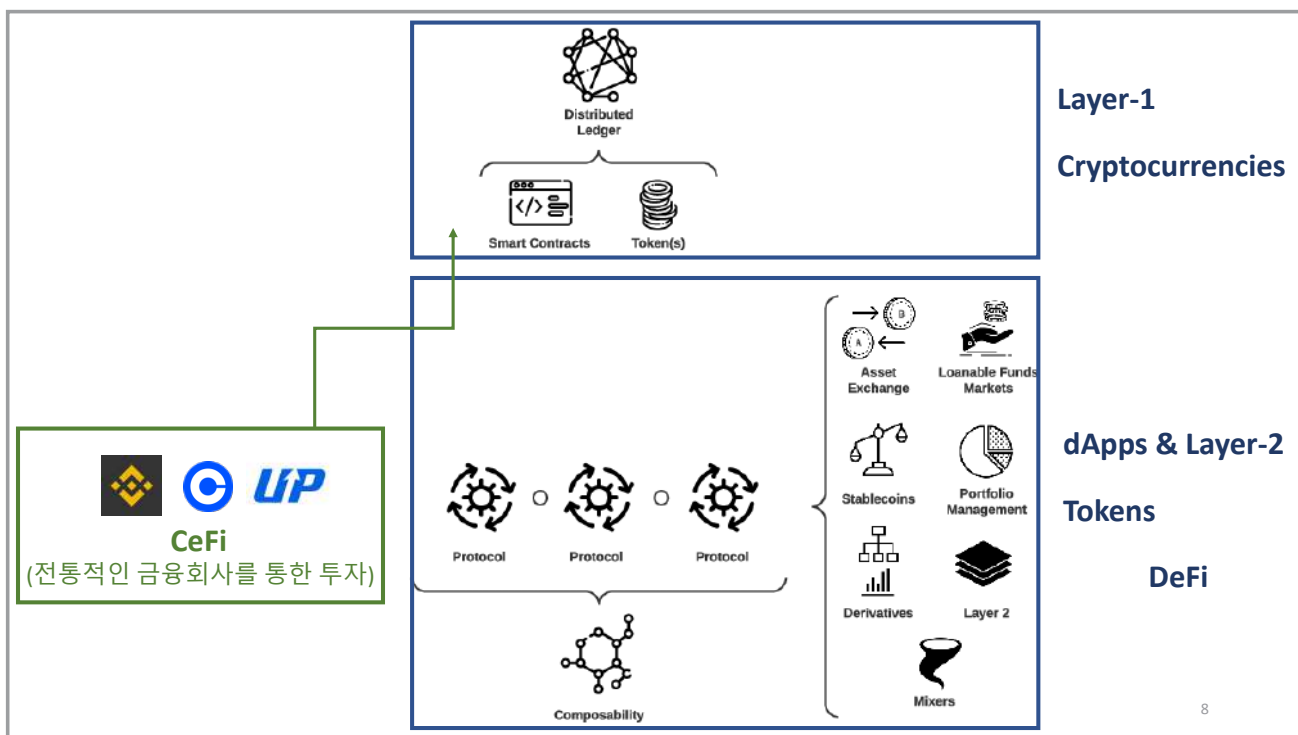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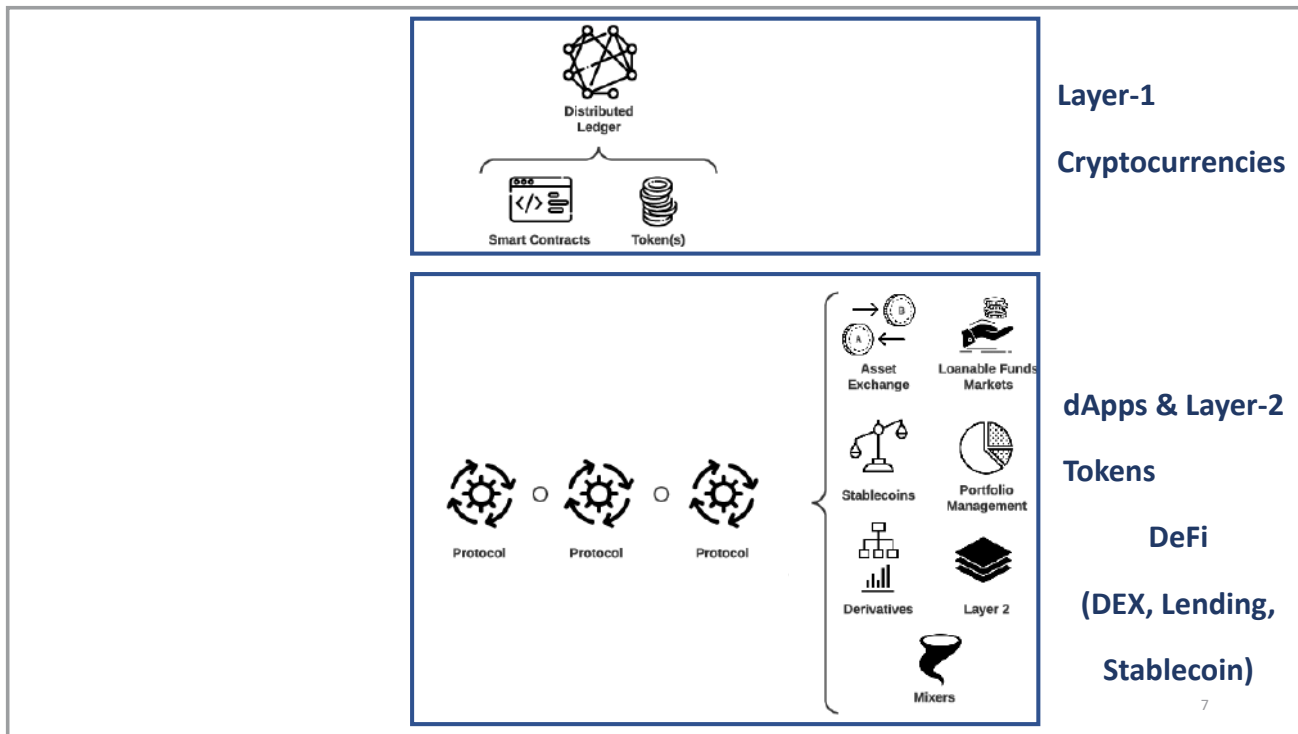
### 가상자산 시장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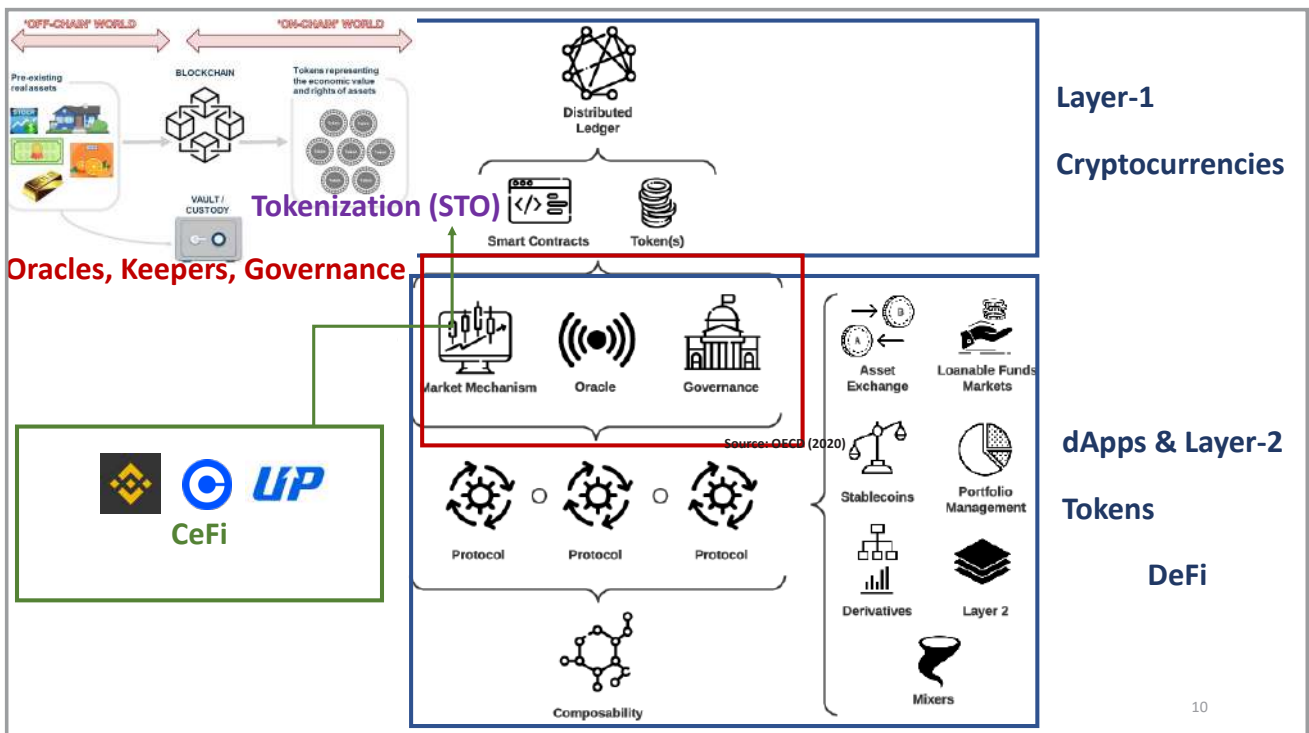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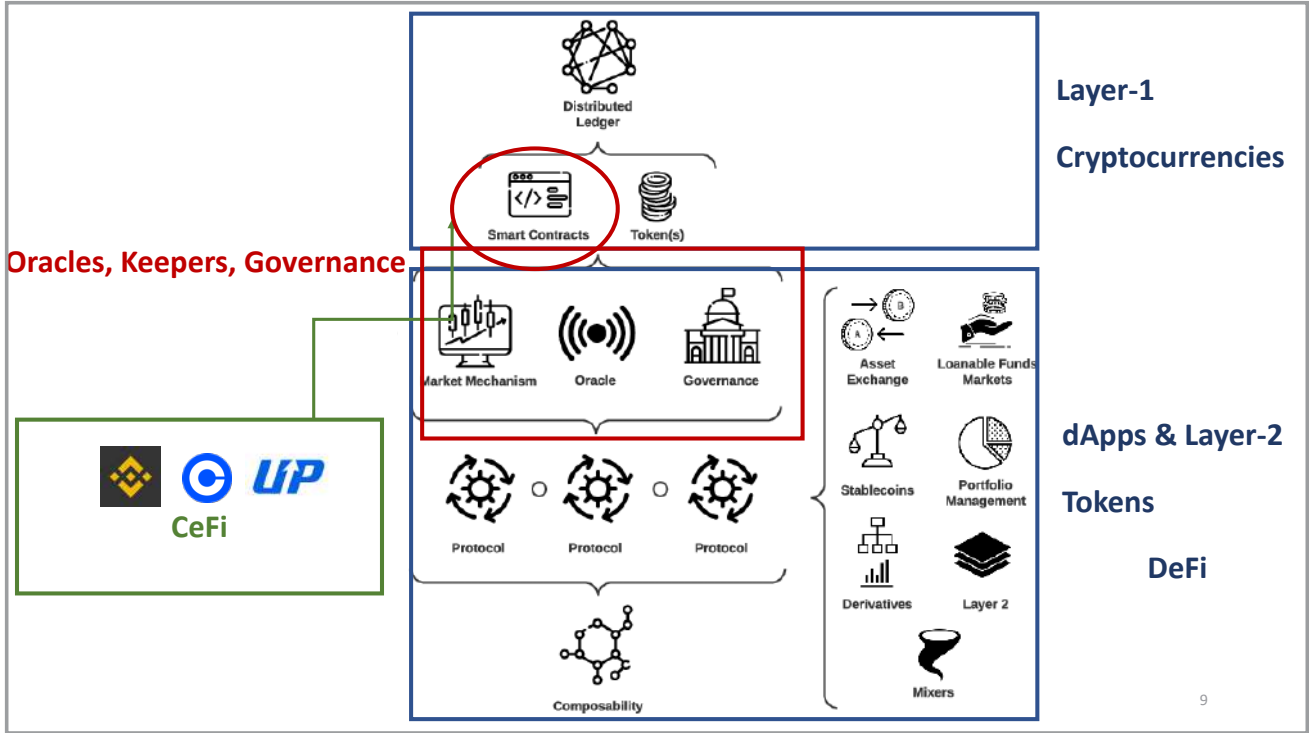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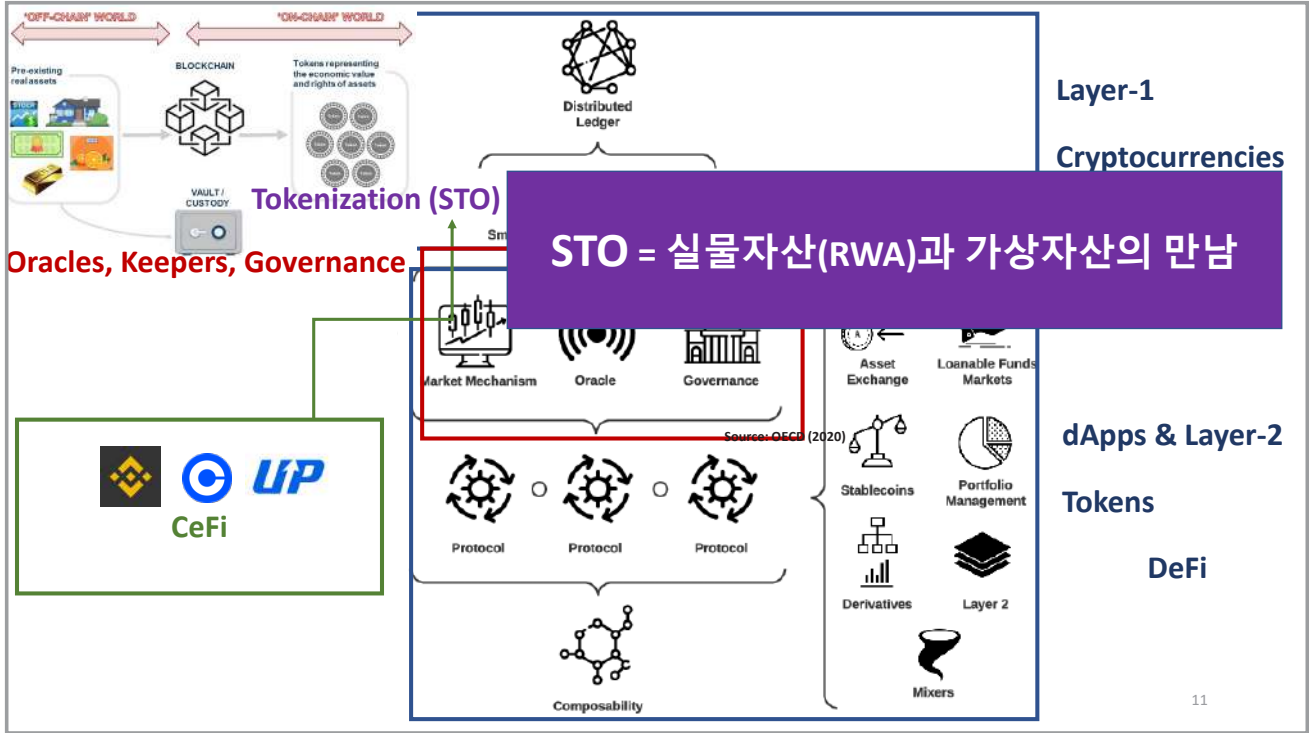
4











## 중요한 기술적 트렌드

- 이더리움 Layer 2 솔루션
  - 2024년 3월 13일 이더리움 덴쿤 (Decun) 업그레이드
  - Layer-2 프로토콜 (Polygon, Optimism, Arbitrum, StarkNet)의 활용을 더 용이하게 하여 이더리움 상에서 거래 기록을 더 빠르고 (Scalability) 적은 비용으로 (Low Gas Fee) 처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Zero-Knowledge Proof 기반 Layer-2 프로토콜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의 기관 활용 확대를 시도

	Pre-Dencun Simple Transaction	Post-Dencun Simple Transaction
Arbitrum	\$0.49	\$0.10
Optimism	\$0.32	\$<0.01
Polygon zkEVM	\$0.48	\$0.84
StarkNet	\$0.67	\$<0.01

## 중요한 기술적 트렌드

- Oracle 시장의 성장
  - Third-Party Oracle인 Chainlink는 검증없이 바로 온체인으로 데이터를 올리는 First-Party Oracle 방식(예: Pyth)에 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프체인 가격 정보를 온체인화
  - RWA의 토큰화에 필수적인 기술의 진화
- Sovereign Blockchain 개념으로의 진화
  - Canton 네트워크는 브리지 방식을 통하지 않고 여러 개의 Private Blockchain을 병합
  - 기관사용자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 (Self Sovereign Identity)와 여러 체인 간의 상호연결성 (Interoperability)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음
  - 블록체인의 토큰증권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시도

##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 현황

## Mapping the Institutional Digital Asset Infrastructure



15

## 글로벌 사업 현황

- 홍콩과 싱가포르 정부 중 싱가포르는 3AC과 테라 붕괴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보수적 태도로 바뀜
- 보다 발 빠른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로는 홍콩 시장을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
  - 홍콩 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글로벌 금융 허브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이라는 점이 특징
  - 가상자산 사업을 홍콩 내 전통 금융 산업과 접목시켜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드라이브

16

## 글로벌 사업 현황 - 홍콩

### • 가상자산 거래소

- 유럽의 MiCA와 같이 가상자산만을 위한 별도의 기본법이 아니라, 기존의 증권법 및 자금세탁법을 수정하여 수정된 두 법령의 조건을 만족하면 거래 서비스 라이선스(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License, or VATP License)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
  - 기존 증권회사도 가상자산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일정 조건 (2년 이상 가상자산 산업 경력직 채용 등)을 갖추면 거래소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제도권 수준의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질을 높이려 함
- VATP 라이선스는 현재 HashKey('22년 11월), OSL('20년 12월) 두 업체만 확보한 상황.
  - 추가로 Binance, OKX, Bybit, Huobi, Matrixport, Bullish, Gate.io등을 포함한 23개 업체가 라이선스 신청하였고 SFC의 승인 여부 대기 중

17

## 글로벌 사업 현황 - 홍콩 (2)

### • ETF

- 투자 활동에 제약이 많은 제도권 자금도 가상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홍콩 증시에 현물 ETF 상장을 승인
- 만일 중국 본토 자금이 Stock Connect 프로그램(상해, 선전거래소)을 통해 해당 ETF에 투자가 가능해질 경우, 상당 규모의 자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ETF 형태로 투자될 수 있음
- 4월 30일부터 HKEX에 상장하여 거래 개시할 예정

### • 스테이블코인

- 홍콩달러는 페그제도를 통해 사실상 다른 형태의 미국 달러로 볼 수 있음
- 홍콩통화청은 HKD, USD 페깅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규 재정비 작업 중이며, 올해 내로 홍콩 내 은행들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예상되고 있음
- 그 외 다른 제도권 자산(단기 채권 등)의 토큰화도 실험적으로 진행 중

18

## 글로벌 사업 현황 – 기관투자자 현황

- 수탁사업(Custody)과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age)
  - 기관이 직접 가상자산을 운용하기에는 지갑 관리, 보안 절차, 세무와 규제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름
  - 기관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가상자산 보관을 대행하는 수탁사업(Custody)
  - 시장에서 가장 최적의 매수/매도 가격으로 주문을 체결해 주거나, API, Smart Order Routing 같은 기술적 서비스와 대출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age)가 있음
  - 업체와 사례
    - BitGo (미국 기반, 최근 SG approval 완료)
    - Matrixport (서비스명 - Cactus Custody, HK TCSP 라이선스 확보)
    - Talos는 특정 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모아(Liquidity Aggregator) 다양한 거래소에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Smart Order Rounding 서비스를 제공

19

## 글로벌 사업 현황 – 전통 금융의 토큰화

- BlackRock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 (BUIDL)
  - 24년 3월에 론칭한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 (현 AUM USD 290M)
  - BlackRock RWA 펀드사례로 SEC Form D를 제출한 사모펀드로 등록되어 있음
  - Fiat이 아닌 가상자산으로만 가입이 가능
  - 펀드의 자산을 담보로 “BUIDL”이라는 심벌의 토큰이 발행되어 있으며, 특정 창구를 통해 구매 가능함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음)
  - 펀드의 투자처는 미국 국채, Repo 같은 안전자산임
  - BUIDL 토큰의 가격은 \$1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며,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BUIDL 토큰이 추가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지급됨
  - 펀드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 (예: Tokenization/Distribution은 Securitize가, 수탁기능(custody)은 BNY Mellon이 담당)

20

## 글로벌 사업 현황 – 전통 금융의 토큰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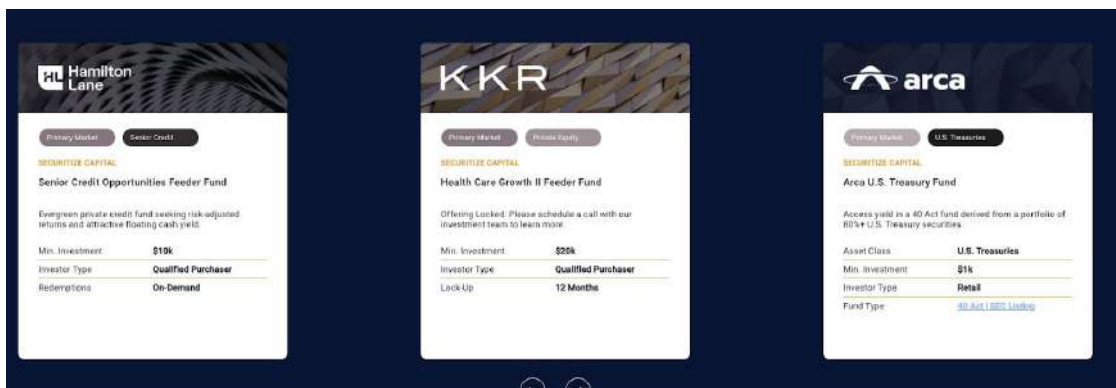
- Matrixport 사례
  - 전통 금융자산 중 접근성이 높은 자산을 토큰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트레이딩 가능한 서비스 제공 중



21

## 글로벌 사업 현황 – 전통 금융의 토큰화 (3)

- Securitize 사례
  - 주요 PE 펀드들의 LP 주식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 확대



22



## 글로벌 사업 현황 – 자산운용

- 고객의 자금을 일임 받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자산운용 사업
  - 업체: HashKey Capital (HashKey Group), MaiCapital
  - MaiCapital 사례: 홍콩 증권 라이선스 및 크립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운용하는 운용사. 최근 전문 펀드 2종을 출시하였음.

### Fund Offer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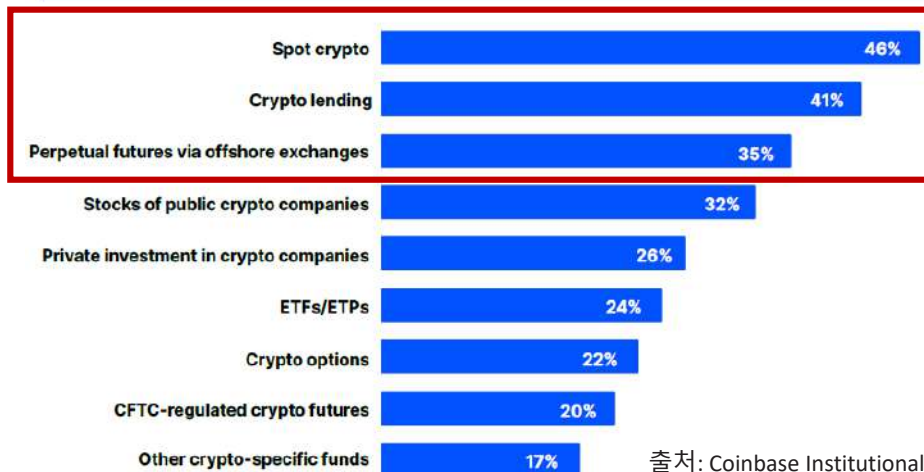
These funds are available for subscription only by Professional Investors (as defined in the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and its subsidiary legislation).

Blockchain Opportunity Fund	Bitcoin+ Investment Fund
Award-winning Quantitative Blockchain crypto & related assets long/short hedge fund with >3 years of auditable track record	Blockchain-related assets Quant Fund that aims to track & potentially outperform Bitcoin's performance in various market conditions
• Top 3 Hedge Fund in Asia in 2021 H1 (ranked by Preqin)	

23

## 글로벌 사업 현황 – 기관투자 채널

Which of the following mechanisms does your institution use to invest in or gain exposure to cryptocurrencies? (Select all)



출처: Coinbase Institutional Report (2023)

## 글로벌 사업 현황 – 향후 기관투자자 활성화 요인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catalyst for growth in the industry?

- 66%** **Tangible economic value, real-world applications**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investors are looking for utility and value in crypto.
- 50%** **More regulatory clarity**  
While an uncertain regulatory environment wasn't seen as a major concern (see data on slide 14), the prospect of more regulatory clarity is seen as a source of certainty in the market – and therefore expected to be a positive catalyst.
- 45%** **Spot ETF / ETP approval**  
Nearly half of investors are also looking for the expected spot ETF/ETP approval to unlock the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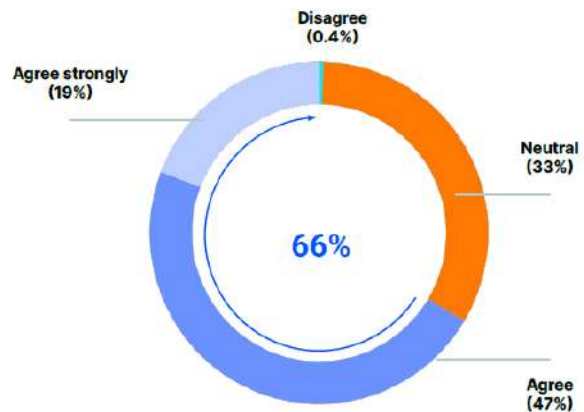
출처: Coinbase Institutional Report (2023)

## 가상자산 사업의 경제적 가치

## 블록체인을 통한 보다 빠르고 안전한 금융거래

- Distributed Ledger Repo 거래 (DLR):  
토큰화된 Repo 거래 시 담보 수탁의 번거로움을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화시켜 줄임
  - 사례: Broadbridge (1.5 trillion USD/month DLR 거래 승인)
- Syndicated Loan 딜 정보 공유
  - 사례: JPM, Citi, BOA, Nomura, UBS, Barclays가 주도하는 Versana 컨소시움
- 외환스와프 및 각종 파생상품 거래
  - Instantaneous settlement

Blockchain technology will eventually replace legacy systems for trade settlement.



## 블록체인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감소

- 최근 중국의 블록체인 활용 ABS 발행 사례 (Chen, Cheng, and Luo, MS 2024)
  -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까지 중국에서 발행한 총 4,390개의 ABS 딜 (10,287 tranches) 중 블록체인을 이용해 기초 자산을 등록하고 관리한 14개의 ABS 딜 (25 tranches)을 이용한 실증 분석
  - 31.4 bps 이자율 스프레드가 감소, 이는 기존 방식으로 발행한 ABS 대비 13% 스프레드 감소
  - 평균 RMB 1,181 million의 원금으로 발행된 ABS의 경우, RMB 9.6 million 정도의 이자 비용이 감소된 것을 뜻함
  - 블록체인에 기록된 자산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고 변경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므로, 이를 통해 투자자의 역선택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도록 도와 줌
  - Lee, Li, and Shin (RCFS 2021)가 ICO 시장에서 발견한 블록체인의 정보 비대칭성 감소 효과와 동일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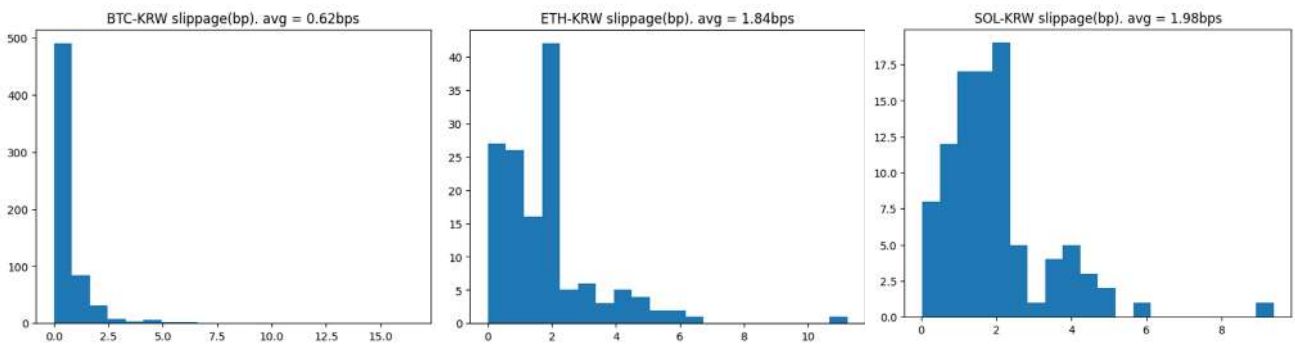
## 기관투자자를 통한 유동성 양성화

- 거래 비용 감소를 통한 시장의 가격 효율성 증대
  - 국내 가상자산 시장 거래는 개인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기형적 구조
  - 투자 심리에 민감한 개인투자자의 수요와 공급만으로는 잦은 가격 버블과 붕괴를 반복. 이로 인해 변동성 비용이 급격히 증가
  - 다수의 기관투자자를 통한 경쟁적 시장 조성은 유동성을 증대효과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하지만 기관을 통한 시장 조성은 강력한 규제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소수의 기관에 의해 유동성 독과점이 이뤄지는 경우,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도가 만연할 수 있음
  - 비트코인, 이더, 솔라나, 리플과 같은 총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의 경우, 시세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수익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29

## 기관투자자를 통한 유동성 양성화 (2)

- 법인 참여로 인한 거래 비용 절감 효과 시뮬레이션
  - 분석 기간: 2024년 2월 1일 - 4월 20일
  - 분석 대상: 국내 대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 가상자산 (BTC, ETH, XRP, SOL)
  - 추정 변수: Slippage (예: 매수 시,  $Slippage = (\text{평균 체결가} - \text{최소 체결가}) / \text{최소 체결가}$ )
  - Slippage 경감시킬 경우, 연간기준, 64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의 거래 비용 절감 효과 발생



##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31

### 경쟁력 강화 방안

- 블록체인 인프라 육성을 위한 (선별적) ICO
  - 국내 주도의 블록체인 인프라 전무
    - 이미 Layer-2 같은 사이드체인 경쟁으로 넘어간 상황
  - 이로 인해 국내 온체인 데이터 분석 인프라 현격히 부족
  - 블록체인은 결국 정보기술 산업
    - 적절한 인프라 구축 없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 어려움
    - 공시 규제를 위해서도 시장 주도형 정보사업자 육성은 필수(예: Messari, Glassnode, Chainlink, Chainalysis)

32

## 경쟁력 강화 방안 (2)

- 전통 금융시장의 블록체인화 및 토큰화에 대비
  - 디지털 금융도 아이러니하게 사람 인프라 사업. 양질의 개발자와 뱅커 모두 필요
  - 따라서, 인접국 (홍콩, 싱가포르) 토큰증권 시장 추이 면밀히 따라갈 필요 있음
  - 앞서 언급한 Web3 비즈니스 모델 (싱가포르, 일본, 홍콩 사례)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변화 추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의 규제 선진화를 모색해야 함

33

## 경쟁력 강화 방안 (3)

- 전통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적 법인 투자를 고려할 필요 있음
  -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 투자 시 DeFi가 아닌 CeFi를 통한 투자를 선호
- 아국(我國) 증권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자본시장규제에 준하는 통제하에 기관투자자 블록체인 인프라 구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법인 투자의 범주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한 공시 규제를 준비해야 함.
  - 가상자산 사업을 전통 금융 산업과 접목시켜 금융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 하는 홍콩의 정책적 드라이브를 참조할 필요 있음

34

## 경쟁력 강화 방안 (4)

-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 가상자산 선물 시장은 투기성만이 아닌 위험관리의 수단으로 많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에게 이용되고 있음
    - 특히나 가격 위험 헤지가 핵심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건전한 파생상품시장 육성은 장기적으로 당면한 과제
    - 최근의 가상자산 준거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경우 담보 가치 헤지의 수단으로 가상자산 선물이 Delta Hedging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예: Ethena)
  -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 법인이나 일부 '전문투자자' (Accredited Investor) 중심으로 한 선물 같은 파생상품 시장 도입과 규제를 고민해야
    - 국내 시장이 어렵다면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을 통해 투자자보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확립된 홍콩, 싱가포르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은 국내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음

35

## 결언

-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 개인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머물다 보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 도태될 수 있음.
  - 전통 금융의 디지털화 및 토큰화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필연적 변화이므로, 이를 위한 정보 기술 인프라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야 함
-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져올 격변기에 개발자, 금융업 종사자, 정보시장 종사자가 모두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 이를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 육성,
  - 기관투자 인프라 육성을 위한 선별적 법인 투자 허용과 추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 확립,
  -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 등
  - 민/관 모두의 현명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

36

**감사합니다!**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디지털자산 정책포럼 토론회

발표 2

#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현황과 글로벌경제력 강화 방안

정영기 변호사 | 김·장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토론회 (2024. 4. 30.)

#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자: 정영기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김원순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본 PT에 기재된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식의견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디지털 자산 법제 현황
- II. 디지털 자산 법제 입법방향 및 개선과제
- III.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주요 쟁점사항

# I. 디지털 자산 법제 현황

##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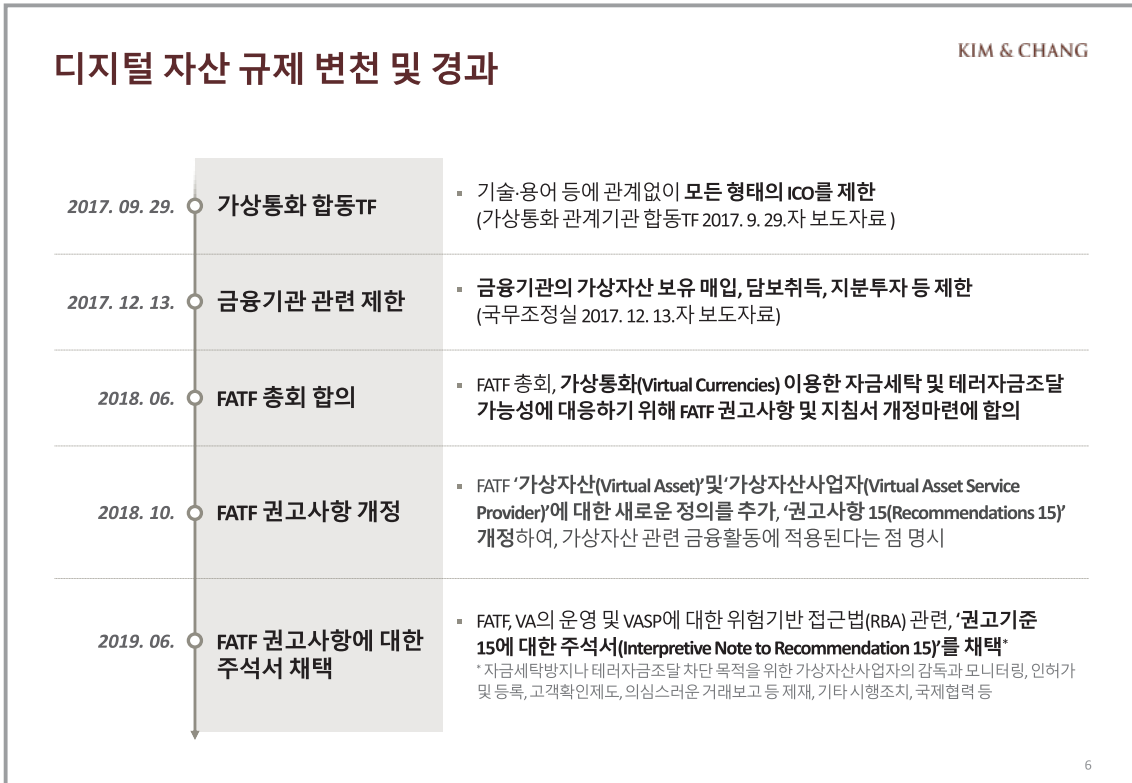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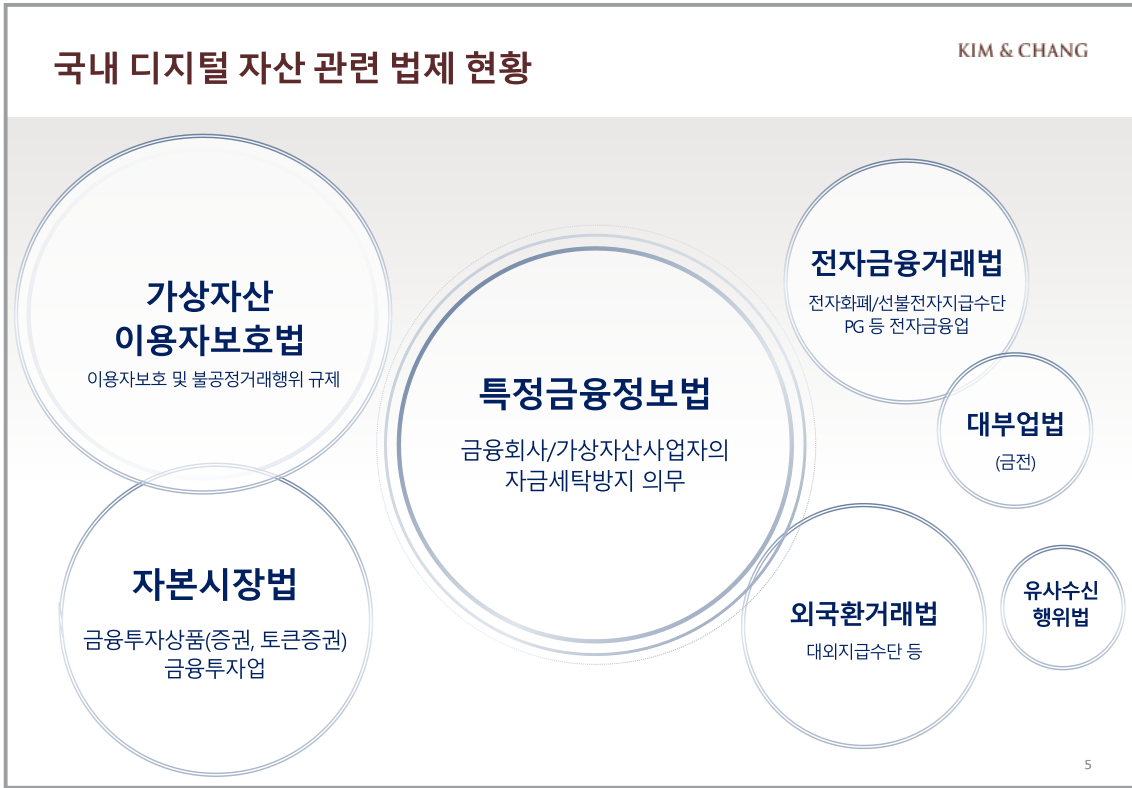
KIM & CHANG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생태계 사례

- |  |   |
|--|---|
| <p><b>De-fi</b><br/>(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용회사와 같은 중개기관 없이 결제·송금·예금·대출·합성자산 등 다양한 금융거래와 유사한 목적 달성 가능</li> <li>프로토콜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수익을 분배</li> </ul>  |
| <p><b>DEX</b><br/>(Decentralized Exchange, 탈중앙화거래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개기관 없이 개인이 통제하는 개인지갑에서 바로 디지털자산 간의 교환(Swap) 등 거래 가능</li> </ul>  |
| <p><b>DAO</b><br/>(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의 목표를 가진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프로젝트 기여도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기도 함</li> </ul>   |
| <p><b>Metaverse</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가상의 세계를 의미</li> <li>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메타버스에서 fungible token이 교환의 매개로 활용되고 NFT(non-fungible token)가 메타버스에서 활용되는 콘텐츠 등에 대한 권리증명서로 활용됨</li> </ul> |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거래·결제 수단을 넘어, De-fi, DEX, DAO 등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자율적 생태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 콘텐츠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Metaverse와도 연계





### (참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35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증권형 코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small>*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small>
비증권형 코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KIM & CHANG
8

## 특정금융정보법 주요 내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KIM & CHANG

#### ◆ 총칙 (정의 조항)

제1장 총칙	
2. 금융회사 등의 의무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5. 보칙	
6. 감독·검사	
7. 벌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들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1.하목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 제1조의2(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가 정하는 행위</li> <li>④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 위 ① 및 ②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합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li> </ul> </li> <li>(금융거래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위 ①~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가상자산거래로 정의하고 이 또한 금융거래 등으로 포함</li> <li>(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로, 다음을 제외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등 / 전자어음 / 전자선하증권 / 거래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시행령제4조)으로 정하는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회사 등) 1.하목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들에 포함</li> <li>(금융거래 등) 2. 라목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상자산거래)를 금융거래등에 포함</li> <li>(가상자산) 3호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정의 원용</li> </ul>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KIM & CHANG

###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1. 제1장 총칙	<b>제6조</b> (적용범위 등)  <b>제7조</b> (신고)  <b>제8조</b> (가상자산사업자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본 법을 적용</li> <li><b>(신고주체)</b>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를 운영하려는 자</li> <li><b>(신고사항)</b>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시행령 제10조의11)으로 정하는 사항</li> <li><b>(신고 불수리 사유)</b> 다음 중 하나의 경우, FIU원장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li> <li>②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동일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에 한정)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li> <li>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④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ul> </li> <li><b>(직권말소)</b> FIU 원장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0조의1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고불수리사유에 해당하거나,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을 미이행한 경우,</li> <li>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li> </ul> </li> <li><b>(영업정지명령)</b> FIU 원장은 시장명령 미이행, 기관경고 3회 이상, 그 밖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 하지 아니한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명령 발령 가능</li> <li><b>(위탁)</b> FIU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관련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가능</li> <li><b>(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시기준)</b> 기준, 조건,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 제10조의18)으로 위임</li> </ul>
2. 금융회사 등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5. 보칙		
6. 감독·검사		
7. 벌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사업자는 STR, CTR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li> </ul>	

1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M & CHANG

### ◆ 가상자산의 범위

법률 제2조 위임	<b>제4조</b> (가상자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 제2조 제3호 '사목'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li> <li>① 전자금융거래법 §2 16.에 따른 전자채권, ②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③ 그 밖에 ①, ②에 준하는 것으로 FIU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li> </ul>
법률 제6조 위임		
법률 제7조 위임		
법률 제8조 위임		
법률 제8조 위임		

12

KIM & CHANG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트래블룰, Travel Rule)

법률 제2조 위임		<b>제10조의10</b>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96 ③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을 적용하는 경우의 정보제공 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름</li> <li>1. 가상자산사업자 →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할 것</li> <li>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주소의 정보를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li> <li>3. FIU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공할 것</li> <li>4. 제2호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 제3호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li> </ul>
<b>법률 제6조 위임</b>			
법률 제7조 위임			
법률 제8조 위임			
법률 제8조 위임			

13

KIM & CHANG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법률 제2조 위임		<b>제10조의 11</b>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서류제출) 특히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의무</li> <li>▪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법 97 ① 2. 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②국적 및 성명(법인이면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 ③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④호스팅서버의 소재지, ⑤ 그 밖의 고시로 정하는 사항</li> <li>▪ (변경신고; 개정조건)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FIU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개정전: 30일 고정)</li> </ul>
법률 제6조 위임			
<b>법률 제7조 위임</b>			
법률 제8조 위임			
법률 제8조 위임			

법률 제8조 위임		<b>제10조의12</b> (신고의 불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불수리 사유 통지) FIU 원장은 법 97 ③ 에 따라 신고를 불수리 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li> <li>▪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설은행 요건; 개정조건)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요건에 더해, AML/CFT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인력 및 그 방지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li> <li>▪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규정되는 법 위반사항) 97 ③ 3. 에 따른 금융관련법률의 범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률</li> </ul>
-----------	--	-----------------------------	--

14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M & CHANG

### ◆ 신고 직권말소 및 영업 정지

법률 제2조 위임		
법률 제6조 위임		
<b>법률 제7조 위임</b>	<b>제10조의13</b> (신고 등의 직권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권말소 사유통지) FIU 원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말소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함</li> <li>▪ (직권말소 예외사유)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직권말소의 예외사유</li> <li>▪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 법 57 ④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li> <li>-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li> <li>-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li> </ul> </li> </ul>
법률 제8조 위임	<b>제10조의14</b> (영업의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정지명령 시 고려사항) FIU 원장은 영업정지 명령 시, 위반행위의 ① 동기 및 배경, ② 유형 및 성격, ③ 효과 및 영향력, ④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을 고려해야 함</li> <li>▪ (AML/CFT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57 ⑤ 3. 에서 AML/CFT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별 관리내역 등의 분리관리 등(법 제8조)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li> <li>- 금융당국의 감독, 명령, 지시, 검사,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li> </ul> </li> </ul>

15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M & CHANG

### ◆ 신고 유효기간 및 정보 공개

법률 제2조 위임		
법률 제6조 위임		
<b>법률 제7조 위임</b>	<b>제10조의15</b> (신고의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유효기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수리한 날부터 3년. 단,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불수리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신고 수리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li> <li>▪ (신고 갱신방식) 법 57 ⑥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은 갱신신고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FIU 원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li> <li>▪ (사전통지) FIU 원장은 갱신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및 그 절차를 미리 알릴 수 있음</li> </ul>
법률 제8조 위임	<b>제10조의16</b>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에 관한 정보 공개) FIU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 및 FIU 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FIU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li> </ul>

16

KIM & CHANG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고 관련 업무 위탁 / 실명확인입출금계정 / 감독규정 위임

법률 제2조 위임	<b>제10조의17</b>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감원으로 업무위탁) FIU원장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의 업무를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li> <li>- 신고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li> <li>-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li> </ul> </li> <li>(업무처리결과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FIU원장에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li> </ul>	
법률 제6조 위임		<b>제10조의18</b>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의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시기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기준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li> <li>-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였을 것</li> <li>-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li> </ul> </li> <li>(금융회사 등의 AML/CFT 의무) 금융회사 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달행위험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할 의무</li> <li>(조건부 개시) 금융회사 등은 AML/CFT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 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음</li> <li>(사용기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li> </ul>
법률 제7조 위임	<b>제10조의19</b>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규정 위임)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로 위임</li> </ul>
법률 제8조 위임			

17

KIM & CHANG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률 제2조 위임	<b>제10조의20</b>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법 §8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li> <li>-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li> <li>- 고객확인(CDD)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li> <li>- 신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 금지</li> <li>- 효율적인 AML/CFT를 하기 위해 다음 ①~③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li> <li>②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li> <li>③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 알선 또는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 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li> </ul> </li> </ul> </li> <li>-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감독규정이 정하는 조치</li> </ul>
법률 제6조 위임		
법률 제7조 위임		
법률 제8조 위임		

18

KIM & CHANG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가상자산 현금환산기준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예외

제8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p><b>제26조</b> (가상자산의 가격산정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D와 가상자산 현금환산기준) 1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여 CDD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상자산 현금환산기준 -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시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li> <li>▪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과 현금환산기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정보제공의무 발생)의 현금환산기준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li> </ul>
	<p><b>제27조</b> (가상자산사업자 의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예외 세부사항) 실명확인입출금계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아도 신고 불수리의 예외가 되는 경우 -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경우의 가상자산사업자</li> <li>▪ (신고 시 필요서류 세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시행령 제10조의11 제1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li> <li>▪ (신고 시 사업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세부사항) ①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②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③외국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사업자 소재지 및 연락처,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li> </ul>

19

KIM & CHANG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8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p><b>제28조</b> (가상자산사업자 의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조치의 세부사항)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단,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인허가등을 거쳐 AML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li> <li>② 가상자산이 하나의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li> </ul> </li> </ul>
--------------------------	---

20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가상자산 규제 관련 고려사항

KIM & CHANG

01 특정금융정보법의 제정 목적 및 한계 고려

0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 법체계적인 관점, 불필요한 중복 규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 및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양 법에서 규율할 사항에 대한 점검 필요

03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와 관련된 고려

04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 절차 관련 고려



(참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현황

- '21.9월말 기준 총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
- 이 중 29개 사업자가 신고수리, 8개사가 신고철회, 5개사가 유보·재심사 후 '22년 신고수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현황 (2024.4.12. FIU 홈페이지 기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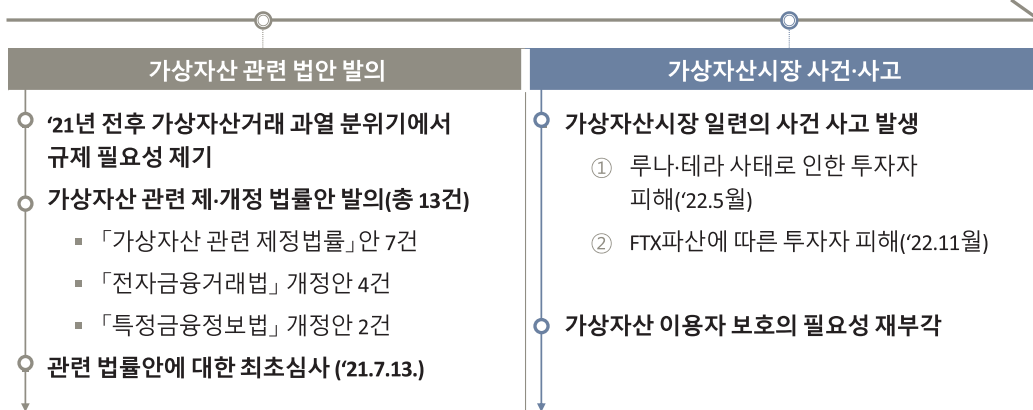
구분	구분	신고접수
거래업자	원화마켓	5
	코인마켓	22
매매업자		1
보관업자(지갑·보관 등)		9
합 계		37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향

KIM & CHANG

#### 가상자산 규제 입법 가속화 / 법률안 입법진행 경과



KIM & CHANG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향

### 가상자산 규제 입법 가속화 / 법률안 입법진행 경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 추가 발의 및 재논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법률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 법률안 추가 발의(총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률」안 5건</li> <li>▪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li> </ul>                             → 당초 법률안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 및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독·검사권한에 초점                         </li> <li>○ 최초 심사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가상자산 규제 법률안 논의                              약 1년 4개월만에 재개 ('22.11.17. 제2차 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4.25.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19개 제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 법률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li> <li>○ '23. 5. 11.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법률안 의결</li> <li>○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확정,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 후 시행</li> </ul>

25

KIM & CHANG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및 의의

- 단계적 입법: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 최초 입법작업시 가상자산기본법 입법을 의도하였으나 2022. 11월경 일단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이용자자산보호 및 불공정거래규제에 관한 1단계 입법을 하고, 이후 기본법으로의 2단계 입법으로 나아가기로 함
  - 1단계 입법으로서 완결성이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음
-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최초의 업권법 차원의 입법
  - 특금법상 VASP 규제는 AML차원의 규제
- 가상자산기본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

26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및 의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인한 한계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거의 그대로 원용\*
  - \*제2조 제1호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및 제외규정→특금법 제2조 제3호
  - \*제2조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류→특금법 제2조 제1호 하목

### 중요한 사항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으로 인한 한계

-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의 보관방법 및 기준, 정보의 공개방법, 이해관계자, 조치 등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의 정합성에 대한 한계

- 가상자산사업자(제12조 외)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사업자(제12조)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체계 마련 필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법률의 체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총칙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등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li> <li>정의</li> <li>국외행위에 대한 적용</li> <li>다른 법률과의 관계</li> <li>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치금의 보호</li> <li>가상자산의 보관</li> <li>보험의 가입 등</li> <li>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li> <li>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li> <li>이상거래에 대한 감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li> <li>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li> <li>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li> <li>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li> <li>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li> <li>권한의 위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벌칙</li> <li>몰수·추징</li> <li>양벌규정</li> <li>과태료</li> </ul>

※ 부칙: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일반적인 영업행위(설명 의무, 명의대여금지, 유사수신과 방판매 금지 등)에 대한 규율은 추후 보완 입법을 통해 추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KIM & CHANG
내용 개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li> </ul>
2. 이용자 보호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23.와 동일하게 규정(제외범위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추가)</li> <li>(가상자산사업자)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21.하목과 동일하게 규정 → 동 법에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이 법을 인용하도록 부칙(§2)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li> <li>(이용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li> <li>(가상자산시장)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li> </ul>
3.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3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li> </ul>
4. 감독 및 처분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가상자산 금융 관련 <b>일반법적 지위 부여</b></li> </ul>
5. 벌칙	제5조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b>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b>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KIM & CHANG
내용 개관		
1. 총칙		
제2장 이용자 보호	제6조 (예치금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 예치금의 <b>예치</b> 또는 <b>신탁 방식</b>을 동시에 규정* →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방안을 함께 규정(① 이용자 예치금이 이용자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고 / ② 동 예치금은 상계·압류 대상이 아니며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동 예치금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 ④ 사업자 신고의 말소, 해산·합병결의 및 파산선고시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li> <li>* “예치”는 단지 제3의 기관에 금전을 보관하는 것이지만,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상계가 금지되고,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귀속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li> </ul>
3.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7조 (가상자산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b>이용자의 주소·성명 및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가상자산 전자지갑주소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비치</b>해야 함</li> <li>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b>분리 보관</b>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b>현실적으로 보유</b>해야 함</li> <li>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b>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b>해야 하고, 이러한 <b>콜드월렛 보관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함</b>(향후 70%로 규정하되, 대규모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보관비율을 낮추어 적용하는 방안 마련)</li> </ul>

KIM & CHANG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내용 개관

- 1. 총칙
- 제2장 **이용자 보호**
- 3. 불공정거래의 규제
- 4. 감독 및 처분 등
- 5. 벌칙

<b>제8조</b> (보험의 가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b>보험</b> 또는 <b>공제</b>에 가입하거나 <b>준비금을 적립</b>하는 등 <b>필요한 조치</b>를 해야 함</li> </ul>
<b>제9조</b>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사업자는 <b>가상자산거래기록</b>(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발생시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b>거래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b>해야 함</li> </ul>

31

KIM & CHANG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내용 개관

- 1. 총칙
- 2. 이용자 보호
-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 4. 감독 및 처분 등
- 5. 벌칙

<b>제10조</b>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b>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됨</li> <li>▪ <b>(시세조종행위)</b>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 또는 시세변동·고정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li> <li>▪ <b>(부정거래행위)</b>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사기,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부정거래의 유형으로 인정할 것인지 →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li> </ul> </li> <li>▪ <b>(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b>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생성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li> <li>▪ <b>(손해배상책임)</b> 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li> </ul>
-------------------------------	--

3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KIM & CHANG

내용 개관

- 1. 총칙
- 2. 이용자 보호
-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 4. 감독 및 처분 등
- 5. 벌칙

<p><b>제11조</b>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입금 및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됨 / 차단시에는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 위반시 위탁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발생(위반사실 안 때부터 2년 또는 위반행위시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li> </ul>
<p><b>제12조</b>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상거래(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를 상시 감시하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감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li> <li>위 상시감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10(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 및 금감원장에게 통보 의무(다만, 동 규정 위반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사실 금융위와 금감원장에 보고)</li> </ul>

33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KIM & CHANG

내용 개관

- 1. 총칙
- 2. 이용자 보호
- 3.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 5. 벌칙

<p><b>제13조</b>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 등 일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li> </ul>
<p><b>제14조</b>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위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혐의가 있는 자 등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감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li> <li>금융위는 위 조사를 위해 위반행위 혐의자 등에게 진술서 제출, 진술을 위한 출석,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의 제출요구 가능(특히, §10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추가조치 가능)</li> </ul>
<p><b>제15조</b>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시정명령·경고·주의·영업정지·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치 가능 /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6월 이내 직무정지,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요구·정직요구,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등의 조치 가능</li> </ul>

3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KIM & CHANG						
<p>내용 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칙</li> <li>2. 이용자 보호</li> <li>3. 불공정거래의 규제</li> <li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제4장 감독 및 처분 등</li> <li>5. 벌칙</li> </ul>	<table border="1"> <tr> <td style="padding: 5px;"><b>제16조</b>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경우(가상자산 거래 관련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가능</b></li> </ul> </td> </tr> <tr> <td style="padding: 5px;"><b>제17조</b>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①~③ 규정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b>2배 상당</b> 금액 이하의 <b>과징금 부과 가능</b>(위반행위 관련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다만, 위 과징금 부과시 동일한 위반행위로 §19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 취소 또는 벌금 상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li> </ul> </td> </tr> <tr> <td style="padding: 5px;"><b>제18조</b> (권한의 위탁)</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는 이 법에 따른 <b>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 가능</b></li> </ul> </td> </tr> </table>	<b>제16조</b>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경우(가상자산 거래 관련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가능</b></li> </ul>	<b>제17조</b>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①~③ 규정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b>2배 상당</b> 금액 이하의 <b>과징금 부과 가능</b>(위반행위 관련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다만, 위 과징금 부과시 동일한 위반행위로 §19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 취소 또는 벌금 상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li> </ul>	<b>제18조</b> (권한의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는 이 법에 따른 <b>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 가능</b></li> </ul>	35
<b>제16조</b>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경우(가상자산 거래 관련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가능</b></li> </ul>							
<b>제17조</b>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①~③ 규정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b>2배 상당</b> 금액 이하의 <b>과징금 부과 가능</b>(위반행위 관련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다만, 위 과징금 부과시 동일한 위반행위로 §19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 취소 또는 벌금 상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li> </ul>							
<b>제18조</b> (권한의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는 이 법에 따른 <b>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 가능</b></li> </ul>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KIM & CHANG						
<p>내용 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칙</li> <li>2. 이용자 보호</li> <li>3. 불공정거래의 규제</li> <li>4. 감독 및 처분 등</li> <li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제5장 벌칙</li> </ul>	<table border="1"> <tr> <td style="padding: 5px;"><b>제19조</b> (벌칙)</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규정(§10) 위반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b>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b> /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형의 가중</li> <li>▪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 가능</li> </ul> </td> </tr> <tr> <td style="padding: 5px;"><b>제20조</b> (몰수·추징)</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li> </ul> </td> </tr> <tr> <td style="padding: 5px;"><b>제21조</b> (양벌규정)</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반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 가능)</li> </ul> </td> </tr> </table>	<b>제19조</b>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규정(§10) 위반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b>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b> /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형의 가중</li> <li>▪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 가능</li> </ul>	<b>제20조</b> (몰수·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li> </ul>	<b>제21조</b> (양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반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 가능)</li> </ul>	36
<b>제19조</b>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규정(§10) 위반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b>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b> /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형의 가중</li> <li>▪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 가능</li> </ul>							
<b>제20조</b> (몰수·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li> </ul>							
<b>제21조</b> (양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반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 가능)</li> </ul>							

KIM & CHANG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내용 개관

- 1. 총칙
- 2. 이용자 보호
- 3. 불공정거래의 규제
- 4. 감독 및 처분 등
- 제5장 벌칙

**제22조**  
(과태료)

- 다음의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용자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6 위반)
  - 이용자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7 위반)
  -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8 위반)
  -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9 위반)
  -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시 해당 사유에 대해 금융위 미보고한 경우(§11② 위반) 이용자에게 사전 미통지 x
  -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 미이행하거나(§12① 위반),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에 관해 감독당국 미통보 등(§12② 위반)
  - §13~§15 규정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7

KIM & CHANG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가상자산의 정의

특금법과 동일하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CBDC)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제외)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8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KIM & CHANG

###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법적 쟁점

KIM & CHANG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법적 쟁점

<b>가상자산의 보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동종종량 실질적 보유 의무</li> <li>▪ 콜드월렛 분리비율 및 위탁의무</li> </ul>
<b>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보관의무와 가상자산업의 충돌가능성</li> <li>▪ 제7조 제2항: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b>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b>”</li> <li>▪ <b>실질적 보유의무의 해석:</b> 금융위, “가상자산 예치-운용, 앞으로 금지”, 2023.9.11.</li> <li>▪ MiCA의 경우 일임업을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하나로 명시(Art 3(1) no.25)</li> </ul>

41

KIM & CHANG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법적 쟁점

<b>가상자산의 의의와 범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의의(제2조 제3호)를 원용하되 CBDC의 제외</li> <li>▪ <b>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Non Fungible Token)의 범위</b></li> <li>▪ <b>유틸리티형 가상자산(utility token), 무상성 가상자산, 제한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가상자산, 분산원장의 검증작업 참여에 따른 보상인 가상자산(소위 POW, Proof of Work) 관련 논의</b></li> </ul>
<b>가상자산사업자의 분류 및 범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류(제2조 제1호 하목)를 원용</li> <li>▪ MiCA의 경우, 보관, 관리업, 거래플랫폼운영업, 교환업, 주문집행업, 모집주선업, 주문접수 및 전송업, 자문업, 운용업, 이전업 등 분류</li> </ul>
<b>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정보의 범위 / 발행회사(자본시장)와 상품(가상자산시장)</li> <li>▪ 정보의 공개방법-2단계 입법과의 관계</li> </ul>


42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법적 쟁점

KIM & CHANG

<p><b>시세조종행위 규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동성공급행위?</b></li> <li>▪ <b>시장참여자들이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시세조종행위 기준</b></li> <li>▪ 매매유인목적 등 해석적용기준 마련</li> </ul>
<p><b>사기적 부정거래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 도입 x</li> <li>▪ 2023.6.30. 개정 자본시장법(법률 제19566호)과의 관계</li> </ul>
<p><b>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거래감시 의무의 구체화</li> <li>▪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li> <li>▪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행위규제(2단계 입법사항)</li> </ul>




43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법적 쟁점

KIM & CHANG

<p><b>가상자산에 필요한 조치수단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결명령, 거래중단조치 등</li> </ul>
<p><b>불공정거래 조사제도의 정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제427조 등 원용 x</li> </ul>



44

## 해외 디지털 자산 법제 현황

## 해외 디지털 자산 법제 현황

KIM & CHANG



### 미국 법제 현황

- **Biden 대통령**, 디지털자산 거래 증가의 위험에 대처하고 디지털 자산과 그 기반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사상 최초의 범정부적 접근법"을 밝힌 **행정명령\*\***에 서명(2022. 3. 9.)
  - \*재무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상무부, 법무부, 연준(Fed) 등의 정부기관
  -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의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가이드라인** 발표(2022.8.16.)
  - 은행에게 가상자산 관련 활동 전 보고 요구
  - 해당 가상자산 관련 활동의 적법성 확인 및 리스크 통제 시스템 구비 의무 부여
- 미국 의회 **Lummis 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the Stabenow-Boozman Digital Commodities Protection Act of 2022** 초당적인 법안 발의
-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및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을 통과(2023. 7월)
  - (블록체인 규제명확성 법안) 사용자의 가상자산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하여 **블록체인 부문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의 일환
  -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CFTC 소관) 과 제한된 디지털 자산(sec 소관) 등으로 분류하여, 가상자산 감독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
  - 다만, 아직 미국 **상원에서는 별다른 법안 통과 움직임은 없는 상황**
- **SEC**는 최근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승인(2024.1.11.)
-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결정될 전망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진(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이며, 당선될 경우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음

KIM & CHANG

## 해외 디지털 자산 법제 현황

### 유럽(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법제 현황**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에 관한 기본법인 암호자산시장규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을 통과(2023. 4. 20.) → 2024.6.30.부터 단계적 시행 후, 2024.12.30.부터 전면 시행  
 → 기존 증권 규제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암호자산시장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단일한 법규(single rulebook)**이자 **일반법(default regulation)**으로 **세계 최초로 제정된 가장 체계완결적**인 암호자산 관련 입법 사례

장 제목	주요 내용	상세 내용
전문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 배제: 금융상품, CBDC, NFT 등</li> <li>암호자산 유형: 자산준거토큰, e-money 토큰, 일반 암호자산</li> </ul>
1. SUBJECT MATTER, SCOPE AND DEFINITIONS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암호자산: 백서 작성·통지·공시, 철회권</li> <li>자산준거토큰: 공모인 자격(인가받은 자, 신용기관), 백서 작성·통지·공시, 간접성 규제, 상환청구권</li> <li>E-money토큰: 공모인 자격(신용기관, 전자화폐기관), 전자화폐지침 적용, 상환청구권</li> </ul>
2. CRYPTO-ASSETS OTHER THAN ASSET-REFERENCED TOKENS OR E-MONEY TOKENS		
3. ASSET-REFERENCED TOKENS		
4. E-MONEY TOKENS		
5. AUTHORISATION AND OPERATING CONDITIONS FO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유형 및 인가 단위</li> <li>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공통/서비스 유형별 의무</li> <li>중요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의 경우 추가 규제</li> </ul>
6. PREVENTION AND PROHIBITION OF MARKET ABUSE INVOLVING CRYPTO-ASSETS	시장 남용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정보 공시 및 내부자거래 금지</li> <li>시세조종, 불공정거래행위 유형</li> <li>시장남용행위 방지, 적발 의무</li> </ul>
7. COMPETENT AUTHORITIES, EBA AND ESMA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권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등</li> <li>주요 조치: 검사자료요구제, 인가 거부·인가 취소 요구 등</li> </ul>
8. DELEGATED ACTS	위임규정 및 경과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집행위원회의 위임권 행사 관련</li> <li>MICA 시행을 위한 위임규정, 가이드라인 등의 준비 기한</li> </ul>
9.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47

KIM & CHANG

## 해외 디지털 자산 법제 현황

**법제 현황**

재무부는 2021.1월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안(UK regulatory approach to cryptoassets and stablecoins)을 발표하고, 1년 3개월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근 영국을 암호자산 글로벌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을 선언\* (2022. 4. 4.)  
 \*HM Treasury, "Government sets out plan to make UK a global cryptoasset technology hub"

이러한 일환으로 재무부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23(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23)**이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힘(2023.6.30.) →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을 영국 금융서비스 규제체제에 포함하여 규제할 방침  
**영국 Bim Afolami 재무장관**은 최근 Innovate Finance Global Summit 2024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코인 스테이킹, 수탁과 관련하여 **올해 6~7월에 새로운 가상자산 법안을 발표할 예정**임을 언급(2024.4.15.)

---

**법제 현황**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에 의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도입 (유가증권표시권리, 전자기록이전권리)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규제 신설

**자금결제법 개정**(2022. 6.):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 일본의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사업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2023.6.부터 시행)

**Web 3.0 백서 승인**(2023. 4.):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NFT, DAO 등 웹3.0 분야에 관한 정책 제언 → **암호자산 산업 확장**에 대해 **관련 규제제안을 공식화하는 것이 목표**

일본 금융청, DAO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기 위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추진

---

**법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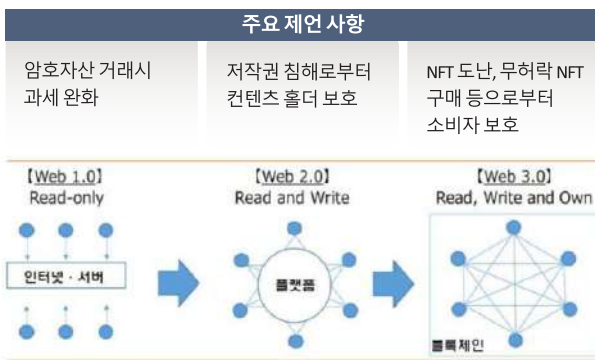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 6. 1.부터 가상자산거래소 허가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재개방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2024. 4. 15. 3개 운용사에 대한 ETF 출시 허용, 2024. 4. 30. 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작 예정)

48

(참고) 일본의 Web3.0 백서 승인과 NFT 규제의 최근 동향

- 일본 경제산업성은 암호자산, NFT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거래하는 트렌드(Web 3.0)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Web3.0 백서 승인(2023. 4.)**
- Web3.0 백서는 NFT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제 제언의 공식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세제 개선, NFT 콘텐츠 홀더 보호, NFT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백서에 나타난 여러 사항은 블록체인·암호자산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로드맵 제공**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2022.7.15

KIM & CHANG

49

(참고) 일본 금융청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추진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정의에 관한 내각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안)」등의 공표에 대해서

금융청에서는, 「금융 상품 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정의에 관한 내각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안)」등을 별지대로 정리했으므로, 공표합니다.

**1. 개정 개요**

본건은, 토큰화된 합동회사등의 사원권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통상의 합동회사등의 사원권과 동등의 규제로 하기 위한 소의 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 1\)](#), [\(별지 2\)](#) 를 참조하십시오.

**일본 국회의원들, 새로운 Web3 정책 수립 위해: CoinDesk Japan**

가와사키 히데토(河崎秀利) 의원은 “분권형 자율조직 이외의 분야 의 현황을 파악해 새로운 정책 포인트를 파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국회의원 다이라 마사아키와 가와사키 히데토는 일본에서 Web3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싶어한다고 수요일 **CoinDesk Japan** 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국가는 Web3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2023년 4월 자민당 Web3 프로젝트팀(web3PT)은 백서를 발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Web3 프로젝트 개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 블로그 게시물이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말에 분산형 자율 조직 (DAO) 규칙 제정 해커톤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입안자에게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web3PT의 견부이사이기도 한 가와사키는 “해커톤을 통해 단기적인 이슈와 중장기적인 이슈가 모두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원문: CoinDesk, © 2023년 1월 24일 오후 8:03

Google Translate  
https://translate.google.com

'24년 일본 금융청은 DAO의 법제화를 비롯해 Web3.0 정책을 활발하게 검토중

KIM & CHANG

50

## II. 디지털 자산 법제 입법방향 및 개선과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문제점 및 한계

KIM & CHANG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슈 및 한계

1. 체계완결성

- 가상자산법의 구조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 있음
- 발행규제와 유통규제,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 구비 필요
- (i) 지급결제토큰과 지급법제, (ii) 증권형 토큰과 증권법제와의 관계 설정 필요

2.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범위

-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
- 예치, 렌딩,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DeFi ?

53

KIM & CHANG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슈 및 한계

3. 조항의 불명확성

<b>이용자 예치금 규제</b> <small>(제6조 제1항)</small>	예치금 규제를 적용 받는 가상자산사업자 → 거래소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
<b>내부자거래 금지</b> <small>(제10조 제1항)</small>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범위 → 자본시장법의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의 관련성 vs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과의 관련성
<b>시세조종 금지</b> <small>(제10조 제2항)</small>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대상 상품 및 거래 장소 → 거래소 상장 불문, 장내/장외 거래 불문 규제범위 확대
<b>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규제</b> <small>(제10조 제5항)</small>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의 원칙적 매매 등 금지 → 자기발행코인에 가격 펌핑, 시세조종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세조종 전 단계의 거래까지 원칙적으로 금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24.7월)까지 시행령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필요**

54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향후 입법 방향(2차 입법 과제)

### 2단계 입법에서 발행, 공시, 영업행위 규제 추가 시 고려사항

-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소 업무(체결) 외 중개, 보관, 예탁(가상자산)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
- 해외 발행자의 경우 공시주체에 대한 의무 및 책임 부과 어려움 및 공시 정보의 부재
- 자본시장법상 발행, 공시, 영업행위 규제 적용 시 가상자산시장/사업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

### 디지털자산의 금융상품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

- 금융상품화, 금융동조화 현상?
-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생태계 활동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결과물인바, 탈중앙적 특성 및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De-fi, DAO, DEX 등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생태계 참여자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 해소 필요

### 신종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진흥 도모 및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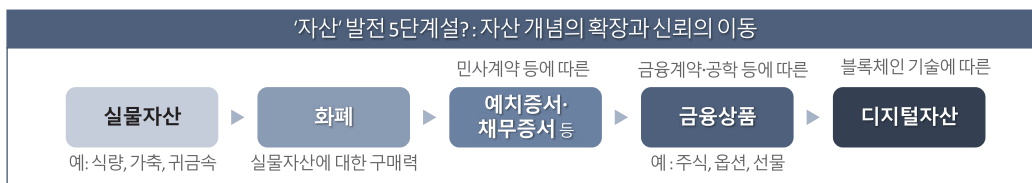
- 금융산업과 가상자산산업의 사실상 분리 정책을 부분적으로 전환하여 디지털자산 관련 생태계가 전통적인 금융권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금융안정, 이용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향후 입법 방향(2차 입법 과제)

### 디지털자산 개념의 확정: 디지털자산의 '자산'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

- 왜 디지털 자산인가? vs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가상자산(Virtual Assets)
- '화폐(currency) vs '자산(Asset)?: 특히, 가치변동성이 크고 결제 등 사용처가 많지 않은 디지털자산의 경우 기술적인 존재 양태는 디지털 데이터(Digital Data)



- 디지털'자산' 개념을 현실에 적용할 경우 법률적 어려움
  - 예시 1 디지털자산은 '물건'인가 '계약상 권리'인가? 물건법 vs. 채권법, 민사집행법 등
  - 예시 2 DAO 와 현행 상법상의 주식회사 제도, 민법상 조합계약 등과의 조화 문제 등

다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갖출 때, 자산으로서 '신뢰'의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법안 논의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향후 입법 방향(2차 입법 과제)

KIM & CHANG

###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성격 (legal nature of digital assets) 규명 필요

-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리 구성을 위하여 가상자산의 성격부터 정할 필요

예시  
가상자산 운용-예치업:

은행업 등과 유사하지만, 법률적으로 가상자산을 '금전 기타 대체물'로 보아 민법상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판결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서 디지털 정보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등 참조). 결국 **비트코인 보관에 관한 법률관계를 민법상의 임치계약관계 그 자체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유상임치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비트코인 자체에는 고유한 값이나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각개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트코인 이전 내지 반환의무는 종류채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민법 제375조 제1항 참조).

57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향후 입법 방향(2차 입법 과제)

KIM & CHANG

###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청구권 등 법적 성격

-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 재산법상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 외에 제3의 분류로 '데이터 객체(data object)'를 인정할 것을 제안(디지털자산 관련 보고서, '22.7.28)
- 가상자산 보유자의 권리: 가상자산의 사용, 수익, 처분권?
- 물건 중 소유권 유사의 권리 vs 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
-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입법화?)
- 형사법적으로는 가상자산 탈취가 절도죄(물건 대상)인지 사기죄(재산상 이익) 인지 여부로 연결됨

대법원 판결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디지털자산의 민사법적 성격을 명확화하여 발행·유통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

58



##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관련 해외 사례

### (참고) MiCA의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 MiCA의 암호자산 서비스 유형 및 인가단위

인가 단위	암호자산 서비스 유형	암호자산 서비스 내용	최소 자기자본 요건
Class 1	주문집행업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자산을 매수·매도	50,000 유로
	인수·주선업	발행인 등을 대신하여 암호자산을 매수인에게 배정	
	이전업	하나의 분산원장 주소에서 다른 곳으로 암호자산을 이전	
	주문접수·전송업	암호자산 매수·매도 청약 주문을 접수 후 제3자에게 전송	
	자문업	암호자산의 매수·매도 등에 관한 개인화되거나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	
	일임업	고객별로 재량을 갖고 가상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	
Class 2	Class 1	-	125,000 유로
	교환업(암호자산→자금)	자기자본으로 암호자산과 자금(fund)간 매수·매도 계약을 고객과 체결	
	교환업(암호자산 간)	자기자본으로 암호자산 간 매수·매도 계약을 고객과 체결	
	보관·관리업	고객을 위해 암호자산을 개인 암호키의 형태로 보관	
Class 3	Class 2	-	150,000 유로
	플랫폼 운영업	암호자산을 매수·매도하는 다자간 시스템을 관리	

### Ⅲ.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쟁점사항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및  
실명입출금확인계정 발급

##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및 실명입출금확인계정 발급

-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인 실명확인계정 발급을 막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 특정금융정보법령에는 실명계정 발급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는 이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에 대해 실명계정 발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경우 자금세탁방지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현재 허용 여부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파악됨
  - 법인 실명계정 발급이 불허될 경우 법인·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 원화마켓에서 배제
- 법인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적 목적

시스템적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대한 금융당국 우려?



내부 리스크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상장법인이 가상자산 투자 시 법인의 배임적 목적의 투자에 의한 주주들의 손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공시강화로 해결? 투자활동이 해당 법인의 영업행위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과의 차이?



변동성이 적은 가상자산에 한정?

##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에 따른 문제점

- 개인이용자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되어 투기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개인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투자에 참여하여 피해 발생 우려
  - 법인·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한되어 개인이용자 중심으로 시장 형성\*
    - \* 개인이용자가 절대 다수이고 법인이용자는 0.01% 미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67%가 50만원 미만 보유
  - 공개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없는 시장에서는 공시된 정보도 합리적 가격발견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개인이용자 중심의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위주로 거래가 형성되어, 이용자가 가격 변동성에 직접 노출되는 부작용

(‘23.3분기) 한국과 미국의 거래소별 메이저 코인 거래 비중

구 분	(美)코인베이스 <sup>a</sup>	(韓)업비트+빗썸 <sup>b</sup>	(a-b)
비트코인	38.0%	7.3%	30.7%
이더리움	19.0%	1.4%	17.6%
합 계	57.0%	8.7%	48.3%

\* 출처 : SEC SHAREHOLDER LETTER (‘23.11.2), 코인힐스(www.coinhills.com)

###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가상자산의 이상 급등락을 막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인·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고려 필요
  - 법인·기관투자자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 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데 일조 → 위험관리, 가격정보 제공,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개인이용자 보호 등의 역할 수행 및 시장의 안전판으로서의 기능 수행 가능
- 현 구조 하에서는 임원 등 개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거래 발생 우려
  - 법인 보유 가상자산을 대표이사 등 제3자의 지갑으로 보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횡령이슈 발생 및 비정상적 거래, 불법차명거래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 문제 발생
- 증권시장 및 해외 가상자산 시장과 유사하게 법인·기관투자자로서의 이용자 범위 확대 필요
- 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디지털자산 관련 국정과제 추진의 선결 조건

###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해외에서는 법인·기관투자자의 고유 재산운용 가상자산 투자(Prop trading) 허용
  -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상장회사, 기관투자자, 보수적인 일부 연기금들까지도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투자
    - 테슬라, 스퀘어 등 해외 주요 상장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조 단위로 투자 중
  -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상장회사, 기관투자자, 보수적인 일부 연기금들까지도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투자
    -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관투자자 거래대금은 20년 4분기 기준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지 [출처: 삼성증권, "블록체인 생태계 2편 플랫폼-거래소, 블록체인 금융 핵심 플랫폼으로 도약"(2021)]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게만 개설되고 있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법인'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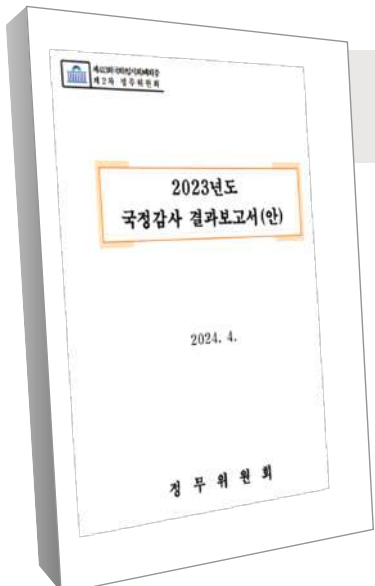
KIM & CHANG

##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상자산시장 안정 및 건전한 활성화 도모,</li> <li>② 가격변동성을 감소시켜 불법 시세조종, 자선거래 세력으로부터 개인이용자를 두텁게 보호,</li> <li>③ 임원 등 개인계정을 활용한 편법거래 등 근절,</li> <li>④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고용 확대</li> </ul>
경제적 가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시 46조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 기대
이용자 보호	<p>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투자자 비중의 증가는 자산가격의 효율성 증가, 가격의 불필요한 변동성 축소에 기여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li> <li>▪ 전문적인 분석자료가 유통됨으로써 개인이용자들의 합리적 결정을 지원하고, 불공정거래가 감소 기대</li> </ul>
일자리 창출	<p>법인 거래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한 가상자산거래소 산업 정상화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에 기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 산업은 2030년까지 약 147,527명 고용 창출 전망</li> <li>▪ 블록체인 관련 금융 분야 등 규제 완화 시, 2025년까지 21,615명의 취업유발효과 예상</li> </ul>

67

## (참고) 2023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4. 4. 23. 자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2023년 정무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중  
'9. 금융위 시정·처리 요구사항'

**9. 금융위원회**

- 국민투자회계 일회성 수익 배분에 대한 세제 조율 필요성 검토하기 위한 일회성 소득 징수율 조정할 것
- 금융위원회 폐지시점에 금융위에 금융감독이 내담할 수 있는 이해관계 관련 제한 조치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공매도, 전산화 도입, 가상자산 금융 논쟁이 위하여 전문가 위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속한 대응 방안 마련할 것
-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조치를 할 것
- 법안심의 공매도 중단 방안 공청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 가상자산 실내용이 될 경우로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인허가 이후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
- 전자상거래 가상자산거래에 법적·준법·세금·채권·채무에 대해 검토할 것
-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법인·기관 투자자에 실명계정을 발급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자료출처  
 ○ 코인스타트프드 전문 세제권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구체적인 부당거래 판정률, 피해 부채액인 자료등 수집하고 단기 집행프로그램  
 189 2023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KIM & CHANG

68

KIM & CHANG

## 제언: 법인의 실명계정 단계적 허용 추진

- 법인 실명계정 허용 시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리스크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 확대**

1단계	세금 납부용, 범죄수익 환수 등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필수적인 거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2단계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경우

예) (1) 기관투자자의 경우 영행행위의 일환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2) 통상적으로 자체 내부 리스크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3) 자금세탁의 위험이 적음 (업무규정 제30조 제2항 제2, 3호)

제30조(고객유형 평가) ② 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기관등(가지노사업자 제외)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서울경제 <https://www.seoulj.com/NewsView>

[단독] 기부받은 코인 못쓰는 서울대... "법인계좌 개설 허용 ..."

3일 전 — 서울대가 10억 원이 넘는 코인(가상자산)을 기부받았는데도 철회를 바꾸지 못하는 지지에 놀이자 정부가 국내 대학들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을 허용 ...

3단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자금세탁의 위험도가 큰 법인 등에 대해서는 불허
-----	---
- 법인 실명계정 허용 시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리스크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 확대**
- 자금세탁 법령에서 자금세탁의 위험이 적다고 명기한 법인에 일단 한정하여 운용 고려** (업무규정 제30조 제2항 제2, 3호)
  - KYC 절차 강화: 법인은 필수적 대면 확인 절차로 투명성 강화
  - (예시) 은행 영업점 대면 채널을 활용한 법인 KYC 표준안을 설계하고, 법인고객에 대해 대면 확인 원칙을 수립

69

## [참고]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법인·기관의 투자 참여 현황

- 해외에서는 고액자산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펀드 등 투자상품 개발**
  - 2021년 기준 미국 기관투자자의 33%, 유럽 기관투자자의 56%가 가상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운용자산(AUM: Asset Under Management) 규모는 약 580억 달러**
  - 나스닥(Nasdaq)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레트지(MicroStrategy) 테슬라(Tesla, Inc), NYSE 상장사인 블록(Block Inc) 등 다수 기업 **비트코인에 투자**
  -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등도 가상자산 관련 투자 참여
  - 북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2023년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전체 거래대금 중 기관투자자 비중이 약 85% 차지

법인명	소재국가	BTC 보유량	현재가치(\$)	BTC 점유율
Microstrategy, Inc.	미국	190,000	9,817M	0.91%
Marathon Digital Holdings	미국	15,741	813M	0.08%
Tesla, Inc.	미국	9,720	502M	0.05%
Hut 8 Mining Corp	캐나다	9,116	471M	0.04%
Coinbase Global, Inc.	미국	9,000	465M	0.04%

70

**[참고]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법인·기관의 투자 참여 현황**

-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규제 기관들은 가상자산거래의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과 법인 간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권고안에 따라 국가별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면 누구나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음
  - 미국, 유럽 소재 법인들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 등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가상자산 취득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비트스탬프 등 미국 및 유럽 소재 주요 중앙화거래소들의 경우 개인 및 법인 온보딩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법인들에게도 합법적인 가상자산의 취득 및 현금화를 허용

**[참고]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법인·기관의 투자 참여 현황**

- 미국의 경우,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Final Standard를 발표함에 따라(2023.12.15.) 미국 법인들은 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변동사항을 **annual reporting periods에 별도로 공시**
- 그 외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및 취득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등의 규제 x (법인계좌에 대하여는, 개인계좌 개설절차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별도의 KYC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Crypto.com 기관투자자 계좌 개설 관련 안내사항

**Institutional Accounts**  
 Information about institutional accounts on the Crypto.com Exchange

 Written by Valery  
 Updated over a week ago

Only companies are eligible for an institutional account, which have different onboarding and KYC requirements.

To find out more information, please apply for an institutional account on the [Crypto.com Exchange](#) by submitting your application through the following link.

[Institutional account application](#)

### BTC 등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 승인

### BTC 등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 승인

KIM & CHANG

23년 美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시장성 자산 가격 하락  
24년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및 최근 비트코인 가격 폭등세

Statement on the Approval of Spot Bitcoin Exchange-Traded Products

Chair Gary Gensler

Jan. 10, 2024

Today, the Commission approved the listing and trading of a number of spot bitcoin exchange-traded product (ETP) shares.

1/11/2024 9:00:00 AM  
Price: \$46,656.07  
Vol 24h: \$45.83B CoinMarketCap

80.0K  
70.0K  
64.9K  
60.0K  
50.0K  
45.8K  
40.0K  
30.0K  
20.0K  
10.0K

Oct 8 11월 '24 09:00:00 Mar

**'미국은 되는데 우리는 왜'...비트코인 현물 ETF 논란 점화**

연암인포맥스

✎ 정필중 기자 | Ⓞ 입력 2024.01.25 11:15 | Ⓞ 수정 2024.01.25 11:1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dxno=4296150>



KIM & CHANG

##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관련 국내 이슈

### 두가지 쟁점사항

**01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상장된 ETF에 투자할 수 있는가**

- 국내 증권사가 중개해야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인가된 중개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 필요
- 기존에 캐나다, 독일 비트코인 ETF 거래를 중개하던 증권사는 금융위 보도자료 이후 ETF 거래중개업무 중단

**02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 수 있는가**

- 현물 ETF의 기초 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느냐 등을 검토 필요

75

KIM & CHANG

##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관련 이슈

금융당국의 입장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의 중개를 금지하는 취지의 입장 발표**  
(2024. 1. 11.자 및 2024. 1. 14.자 보도참고자료 등)

**근거**

**01**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2017. 12. 13.자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보도자료)에 배치됨

**02**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03**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다른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76

##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관련 이슈

KIM & CHANG

**BTC 현물 ETF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가상자산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의 기초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석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기초자산

- ① 금융투자상품, ② 통화(외국의 통화 포함), ③ 일반상품, ④ 신용위험, ⑤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CME CF Bitcoin Reference Rate와 CME Ether-Dollar Reference Rate는 CME가 고시하는 런던 시각 오후 4시 기준의 1비트코인/이더리움의 미달러화 가격으로서 독립적인 감시위원회(oversight committee)가 주기적으로 그 산출 방법 등에 대해 관리·감독
- 비트코인은 적절한 가치 평가가 어려워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초자산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기초자산을 폭넓게 해석하려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반하며,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채택된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의 원칙에 배치됨
-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입장과도 반함

77

## 각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현황 - 미국

KIM & CHANG



-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1.10. 총 11개의 Bitcoin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

CBOE(시카고 옵션거래소) BZX	NYSE(뉴욕증권거래소) Arca	NasD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k &amp; 21 Shares Bitcoin ETF</li> <li>▪ Fidelity Wise Origin Bitcoin Fund</li> <li>▪ Franklin Bitcoin ETF</li> <li>▪ Invesco Galaxy Bitcoin ETF</li> <li>▪ Van Eck Bitcoin Trust ETF</li> <li>▪ WisdomTree Bitcoin Fun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ayscale Bitcoin Trust</li> <li>▪ Bitwise Bitcoin ETF</li> <li>▪ Hashdex Bitcoin Futures ETF</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lackRock's iShares Bitcoin Trust</li> <li>▪ Valkyrie Bitcoin Fund</li> </ul>

- **미국 현물 ETFs 상장 이후, 대규모 자금이 현물 ETF로 유입**
  - SEC 승인 이후, 약 1달 간 미국 Bitcoin 현물 ETF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3%를 초과
  - 미국 ETF가 보유하는 Bitcoin의 비율은 전체 Bitcoin 발행량의 4%에 육박
  - 상장된 미국 Bitcoin 현물 ETF의 총 운용자산액은 약 540억 \$이며(4.24. 기준), 이 중 Grayscale과 BlackRock의 ETF의 비중이 약 70%에 달함
- **기초자산은 Bitcoin에 한정되며, Ethereum 현물 ETF는 SEC의 승인 대기중**
  - 최종 승인 기한은 대부분 5월로 예정되어 있음

78

KIM & CHANG

## 각 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현황 - 미국 외

**캐나다는 2021.2.18. 세계 최초로 Bitcoin 현물 ETF를 토론토 증권거래소(TSE)에 상장**

- Purpose bitcoin ETF의 총 운용자산액은 약 17.8억 \$(USD)에 육박 (4.24. 기준)
- 미국 11개 Bitcoin 현물 ETF가 상장되기 이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였으나, 미국 SEC의 상장 승인 이후 1달간 점유율이 7.4%까지 하락
- 그 외 캐나다에는 Ethereum 기반 현물 ETF도 상장되어 있으나, 총 운용자산액은 Bitcoin 기반 현물 ETF에 비해 미미한 수준

---

**독일에서는 2023. 8. Bitcoin 현물 ETF 출시**

---

**영국 금융감독청(FCA) 또한 기관투자자에 한하여 가상화폐 기반의 ETN(상장지수증권) 승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승인 가능성을 시사(2024.3.12.)**

- 런던증권거래소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2분기부터 Bitcoin과 Ethereum ETN의 상장신청을 받을 것이라 발표
- 유럽국가들 중에서는 이미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들이 상장되어 있는 상황

---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Bitcoin 및 Ethereum 현물 ETF를 승인 (2024.4.15.)**

-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 사례
- 상장승인을 받은 자산운용사 3곳은 4.30. 거래개시를 목표로 상품을 준비중에 있음

79

KIM & CHANG

## 미국 등 해외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의 의의

- **현물ETF 승인은 기관투자자들이 제도권 금융 규제 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함**
  - 상품을 출시한 자산운용사가 실제 현물을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ETF에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기관의 비트코인 현물매수 증가
  - 현물보관의 책임주체는 자산운용사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소유·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킹·암호키 분실 등 보안·보관 리스크 해소
  - 운용사는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고도의 법적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불안전판매 위험이 완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기회 제공
    - ※ 국민연금공단, '23년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에 美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Coinbase 주식 260억원(지분율 0.15%)을 편입 등 가상자산 관련기업에 간접투자 첫 시작
- **거래 활성화로 안정성 제고 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허용도 기대되며, 금(金)과 함께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Hedge 수단으로 작용 가능**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검토 → 별도 법률 개정 없이 자본시장법 해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가능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 정책 시행 고려**

80

67

# Questions & Answers

KIM & CHANG



### 정영기

변호사

T. 02-3703-1607  
E. ygjung@kimchang.com

[Bio](#)

#### 학력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Business Certificate, 2013)
- 대법원 사법연수원 (35기, 2006)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2005)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3)

#### 경력

- 금융정보분석원(FIU)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0-현재)
- 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2019-현재)
-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Hong Kong Office (2013)
- 김장 법률사무소 (2006-현재)



### 김원순

변호사

T. 02-3703-4936  
E. wonsoon.kim@kimchang.com

[Bio](#)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상법, 2021)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9)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A., Economics, summa cum laude, 2013)

#### 경력

-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전문위원 (2023-현재)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산하 금융법연구회 간사 (2019-현재)
- 법무법인 지평 (2019-2021)
-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워싱턴 D.C. 사무소 서머 클럭 (2016)

감사합니다

KIM & CHANG

서울특별시 중로구 사직로 8길 39  
(우) 03170

T 02 3703 1114  
F 02 737 9091/9092

[www.kimchang.com](http://www.kimchang.com)  
[lawkim@kimchang.com](mailto:lawkim@kimchang.com)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디지털자산 정책포럼 토론회